

# 예산총칙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6,800,000	30,504,000
일반회계	813,100,000	24,393,000
특별회계	203,700,000	6,111,000
공기업특별회계	51,600,000	1,548,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600,000	858,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000,000	690,000
기타특별회계	152,100,000	4,563,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913,000	147,39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81,000	65,4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55,000	22,65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488,000	104,640
주택사업특별회계	824,000	24,720
치수사업특별회계	23,193,000	695,79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952,000	178,560
대지보상특별회계	311,000	9,33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8,060,000	2,941,8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100,000	363,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3,000	9,6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90,330천원으로 한다.